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77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윤준병·황명선·허종식

박희승 • 박민규 • 문대림

박홍배 • 조계원 • 김윤덕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

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채권의 이자율·채무부담 금액·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등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및 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발행 및 종류
- 2. 채권의 이자율
- 3. 채무부담 금액
- 4. 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⑦ (생 략)	수급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
	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u>야 한다.</u>
<u><신 설></u>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
	산에 반영하고, 매 회계연도마
	다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1. 채권의 발행 및 종류</u>
	<u>2. 채권의 이자율</u>
	<u>3. 채무부담 금액</u>
	4. 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
	<u>7]</u>